

행위제한(연장, 변경)열람 공고 (면목역세권·사기정역세권 재개발사업)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4조에 따라 현재 정비계획 입안이 진행 중인 면목역세권 및 사기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, 기 지정된 행위제한에 대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하기 위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,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7월 9일
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

1. 제한지역

연번	위 치	기 제한면적(㎡)	금회 제한면적(㎡)	비고
변경	면목본동 542-7번지 일원	72,683.4	80,278.7	가칭)면목역세권
변경	면목38동 572-1번지 일원	63,767.6	69,712.7	가칭) 사기정역세권

2. 제한사유

- 가.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
- 나. 건축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제한으로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

3. 제한대상행위

- 가. 건축물의 건축
 -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
 - 「건축법」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
 -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
 - 「건축법」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
 - 「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따른 집합건축물로의 전환
 -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
 -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
- ※ 예외사항 :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대수선의 경우 허용

- 나. 토지분할

4. 제한기간 1년 연장

(기존) 2023. 9. 8. ~ 2026. 9. 7. → (연장)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1년

5. 열람기간 및 장소

- 가. 열람기간 : 2026. 7.9. ~ 7. 24.(14일 이상)
- 나. 열람장소 : 중랑구청 주택개발추진단(2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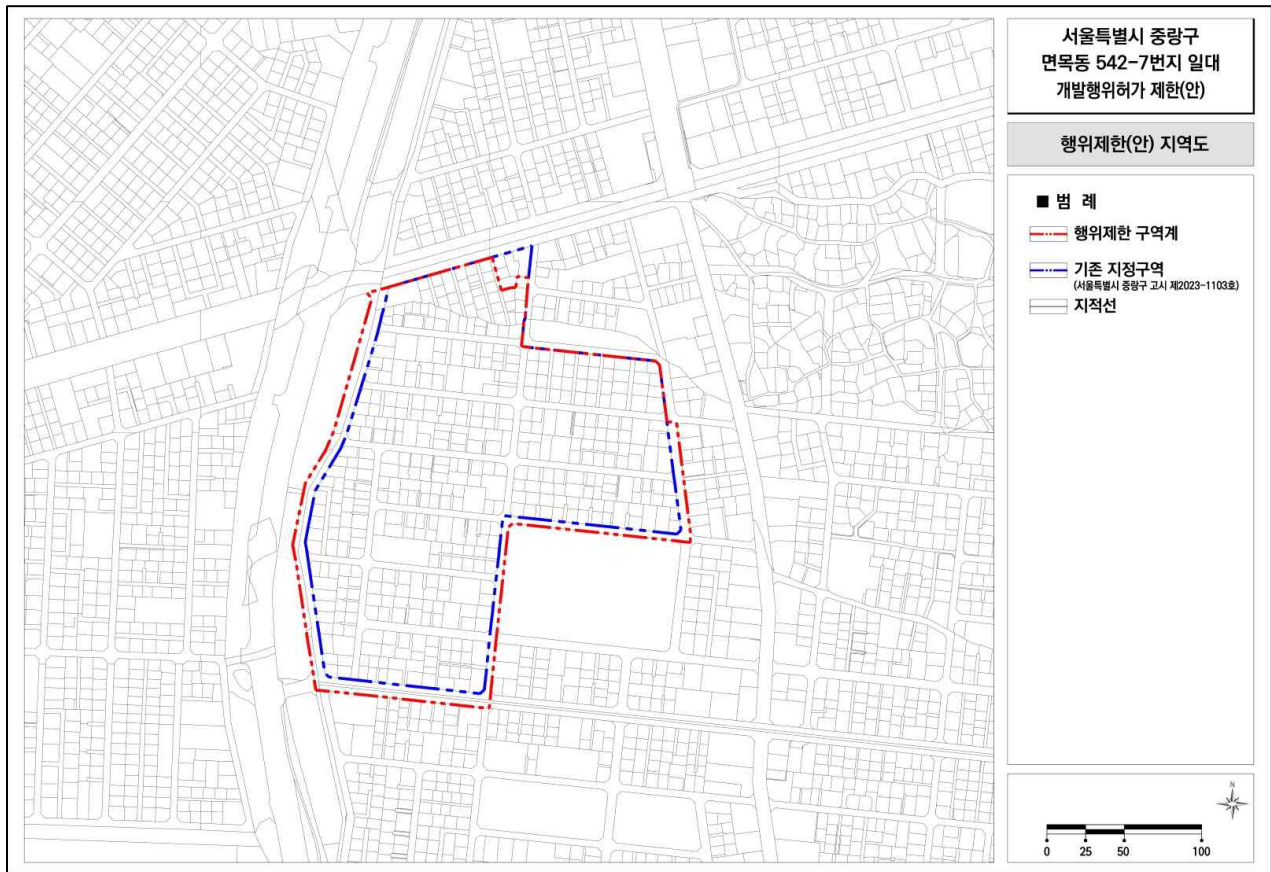
6. 관계도서 : 게재 생략(열람장소에 비치)

7. 제출방법 : 방문 또는 우편(※ 열람기간 내 도착 분에 한함)

8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주택개발추진단(02-2094-6892~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붙임(지형도면)

○ 면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예정구역



○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예정구역

